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9호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1 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 관한요령 일부 개정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을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으로 한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을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으로 한다.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를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로 한다.

제3조 제4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3호, 제14조 제3호의 전단중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영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 제2조 제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3조 제4호 나목, 제7조 제3호 나목, 제14조 제3호 나목에 “주주현황”을 신설한다.

제8조 전단중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 제3호”를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4조 제2호에 단서조항 “이 경우 가목의 서류는 신규 자회사 및 정관이 변경된 자회사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 제2호 가목에 “정관”을 신설한다.

제14조 제3호에 단서조항 “이 경우 가목의 서류는

신규 사업관련손자회사 및 정관이 변경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행정정보공개자료실 소관법령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02·503-9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3호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제18호 및 동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라 함은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동시결제를 통한 외환결제리스크의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환결제전문기관인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5.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

업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백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1항중 “미화 5천만불”을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외화대출(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를 “외화대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2.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수출보험법에 의해 지원하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거래에 따른 동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2004년 1월 14일자 동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2조제1항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위탁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너.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의 미화 1천불이하의 증여성 지급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카지노에 설치된 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카지노에서 사용하기 위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와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중 “비거주자에게”를 “한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비거주자가”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비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을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3-10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2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제목중 “지급절차”를 “지급등의 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

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중 “지급증빙서류”를 “지급등의 증빙서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을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등”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영수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지급

⑤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설립비용의 반환은 지출비용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5호에 의하여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백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제4-7조제2항중 “지급증빙서류에 지급일자, 금액 및 지급은행”을 “지급등의 증빙서류에 일자, 금액 및 은행명”으로 “지급신청서 등을”을 “지급신청서를”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

<p>지 아니하다.</p> <p>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영수</p> <p>3.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p> <p>제5-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한국은행총재”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p> <p>7.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 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p> <p>8.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p> <p>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2조제1항제7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p> <p>제7-2조 단서 및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6.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1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 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p> <p>제7-8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 비거주자(자금의 수령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p>	<p>는 금융기관 포함)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지급수단</p> <p>제7-9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자금의 지급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처분을 포함)</p> <p>제7-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CLS은행 또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원화 포함)예금 또는 원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p> <p>제7-13조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44조제3호바목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취득주택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p> <p>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 원화 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원화 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하는 경우</p> <p>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 원화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p> <p>제7-14조제1항 단서중 “다만, 건당 미화 3천만불”을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당 미화 3천만불”을 “미화 3천만불”로 하며, 동조제7항중 “외화자금을 “을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로 한다.</p>
---	--

<p>제7-1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p> <p>제7-2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p> <p>5. 거주자가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p> <p>제7-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또한,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p> <p>제7-3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투자신탁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p> <p>3. 제7-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등의 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p> <p>제7-3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p>	<p>5항제2호중 투자신탁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p> <p>1.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 등. 다만, 외국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제7-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각대금은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증권예탁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p> <p>제7-4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한다.</p> <p>2. 신용파생금융거래중 보장매입거래</p> <p>제7-4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를 “이 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조, 제9-6조 및 제9-8조”로 한다.</p> <p>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p> <p>7.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p> <p>제7-44조제3호라목(1)중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로 동조동호라목(3)중 “1억불”을 “3억불”로 하고, 동조동호라목(2)를 삭제하며, 동조동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바.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미화 50만불(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p> <p>제7-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7-44조의 2 (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는 제7-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p>
---	--

<p>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44조 제3호바목의 금액이 미화 20만불 이하인 경우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제7-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2.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 부동산 처분대금 국내회수후 3월 이내 3. 수시보고서 :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채재사실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p>제7-4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7-44조의3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자금의 회수) ①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44조제3호바목의 주택을 취득한 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p> <p>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한 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기한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영업자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54조제4호중 “항공기”를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 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하고, 동 조제16호단서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동 조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과 결제관련</p>	<p>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p> <p>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p> <p>제7-55조제2항제1호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p> <p>제7-57호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매매를 포함)를 하는 경우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원화가 개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 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 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스왑거래(In/Out Swap) 라. 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 현물환, 선물환 또는 스왑거래 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영수하는 거래 바.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약정 체결
---	---

<p>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제9-5조제2항제1호중 “1백만불”을 “3백만불”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매출액의 30%가 미화 1백만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백만불”을 “매출액의 30%가 미화 3백만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백만불”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⑨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 투자에 대하여 사후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p> <p>제9-9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5.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이내. 다만,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천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9-9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p>	<p>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11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3. 금융·보험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당해 거주자 자기자본의 30%이내인지 여부</p> <p>제9-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의 설치·변경·폐쇄현황,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처분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국제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9조제1항중 “신고등을 한”을 “신고등을 받은”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법·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외국환은행의 장이 하여야 한다”를 “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p> <p>제10-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9호 내지 제16호를 동조동항제10호 내지 제17호로 한다.</p> <p>9. 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p> <p>제10-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통보대상거래</p> <p>제2-2조, 제2-3조, 제2-13조, 제3-2조, 제4-7조, 제4-9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11조, 제6-2조, 제7-10조, 제7-21조, 제7-37조, 제7-49조, 제9-9조, 제9-2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p> <p>별지 제3-7호서식 내지 제3-13호서식을 별지와</p>
--	--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31일까지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제3조 (폐지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제 41271-7. 2003. 1. 6.)
 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82. 2003.11. 8.)
 3. 외화수표 수입절차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107. 2003.11.25.)

4.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의 선물거래소 이관 에 따른 통첩(외환제도과-166. 2003.12.26.)
5.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0. 2004. 1.14.)
6.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3. 2004. 1.19.)
7. 외국환증개업무 인가신청절차 개선과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24. 2004. 1.30.)
8.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62. 2004. 2.18.)
9.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03. 2004. 3.19.)
10.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43. 2004. 4.19.)
1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280, 2004. 7.16.)
1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342, 2004. 9. 1.)

[별지 제3-7호 서식]

외국환증개업무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① 상 호		④ 목적(대표자)	
③ 대 표 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환증개업무의 내용			
⑦ 자 본 금	자기 자본	백만원	납입 자본
⑧ 인 력 현 황	임원	명	외국환증개전문요원 명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전화			⑨)

210mm × 297mm

<첨부서류>

1. 정 관
2.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3. 외국환 증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구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외국환 증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계산서
6. 임원의 이력서
7.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8호 서식]

외국환증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환증개업무의 내용				
⑦ 자 본 금	자 기 자 본	백만원	납 입 자 본	백만원
⑧ 인 력 현 황	임 원	명	직 원	명
외국환증개전문요원 명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첨부서류>

1.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
2. 정관(안)
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또는 발기인의 이력서
5. 주주구성 및 자본금 조달 계획서
6.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안)(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전산설비 구비 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과 예상수지계산서
7. 외국인과의 합작의 경우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9호 서식]

외국환증개회사합병(영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합 병 자 (양 수 자)	① 성 명(대표자)	(인)		
	② 상 호			
(피 합 병 자) (양 도 자)	③ 소 재 지	④ 자 본 금		
	⑤ 성 명(대표자)	(인)		
합 병 자 (양 도 자)	⑥ 상 호			
	⑦ 소 재 지	⑧ 자 본 금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화)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첨부서류>

1. 합병 또는 양도·양수의 목적 기술서
2. 합병 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3.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내역서
4.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5. 합병(양도, 양수)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 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계산서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 내역 및 계획
7.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0호 서식]

외국환증개회사해산(업무폐지)신고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해산 및 폐지사유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첨부서류>

1.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직원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차 계획
3. 해산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일정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1호 서식]

외국환증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적(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환증개업무의 내용			
신 고 내 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소 재 지			
자본·시설·전문인력 사항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화)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첨부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2.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2호 서식]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책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에서의 외국환 중개업무 영위 방법			
⑦ 지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력 및 시설현황			
⑧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상호, 소재지, 인력 및 시설현황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첨부서류>

1.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 관련 사업계획서(지점 및 사무소 운영 및 영업계획, 외국 법인에 대한 주식 및 출자지분 취득 및 경영참여 계획 등)
2. 외국내 지점 및 사무소 설치가 소재지 국가의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13호 서식]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		② 설립연월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국책대표자	
⑤ 소 재 지			
⑥ 외국에서의 외국환 중개업무 영위 방법			
⑦ 지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력 및 시설현황			
⑧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상호, 소재지, 인력 및 시설현황			
⑨ 변 경 내 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첨부서류>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2.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발급번호		처리기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국내거소	(연락처)		
부 동 산 매 각 자 금 내 역			
부동산	소재지	면적(㎡)	
	지목	양도가액(원)	
	양도일자	확인금액(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모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배리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각1부 3.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작성요령			
1.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및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2.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전답,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3.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 매각당시의 가액을 기재			
다만, 기문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매각대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재			
4. "확인금액"란에는 양도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			
5. 토지수용 등의 경우 본서식머신 사업시행소관부처정의 확인서를 첨부			

○농림부고시제2005-50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 13] 3의 나에 의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4-67호, 2004. 11.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농림부장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중 개정

식육의 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별표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 상태별 부위명중 돼지고기의 대분할 부위명의 삼겹살에 해당하는 소분할부위명을 “삼겹살, 갈매기살”을 “삼겹살, 갈매기살, 갈비삼겹”으로 하며, 제2항의 “별표2”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의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중 소분할육 정형에 갈비삼겹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대분할 부위명	소분할 부위명	분할정형기준
삼겹살	갈비삼겹	제5능골 또는 제6능골에서 마지막 능골중 흉추쪽 부위로서 능골에 늑간근(갈비살)이 포함되어 6cm이내가 되도록 등심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식육판매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 세분화된 부위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 또는 소분할 부위명 다음에 ()를 이용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